

검 토 보 고 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 9. .

도 시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진 원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등 반영과

집행잔액의 반납 등

세출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추경(안)으로써

2026. 8. 31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 2026년도 추경2회 예산규모 >

2026년도 추경 2 회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864,302,555	100.00%	2,585,667,539	100.00%	278,635,016	10.78%
일반회계	2,479,477,809	86.56%	2,263,196,032	87.53%	216,281,777	9.56%
특별회계	384,824,746	13.44%	322,471,507	12.47%	62,353,239	19.34%
공기업특별회계	240,998,952	8.41%	206,852,247	8.00%	34,146,705	16.51%
상수도사업	70,448,456	2.46%	67,593,647	2.61%	2,854,809	4.22%
하수도사업	170,550,496	5.95%	139,258,600	5.39%	31,291,896	22.47%
기타특별회계	143,825,794	5.02%	115,619,260	4.47%	28,206,534	24.40%
의료급여사업	10,926,534	0.38%	9,841,358	0.38%	1,085,176	11.03%
발전소주변지원사업	201,010	0.01%	191,185	0.01%	9,825	5.14%
수질개선	30,405,691	1.06%	29,058,355	1.12%	1,347,336	4.64%
공유재산관리	45,027,573	1.57%	20,751,839	0.80%	24,275,734	116.98%
교통사업	14,921,515	0.52%	14,749,860	0.57%	171,655	1.16%
도시재정비촉진	3,087	0.00%	21	0.00%	3,066	14600.00%
지하수관리	362,480	0.01%	351,410	0.01%	11,070	3.15%
폐기물처리시설	35,963,829	1.26%	35,963,829	1.39%	0	0.00%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6,014,075	0.21%	4,711,403	0.18%	1,302,672	27.65%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2조 5,856억 6,753만 9천 원에 비하여
 2,786억 3,501만 6천 원이 증가된
 2조 8,643억 255만 5천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62억 8,177만 7천 원이 증가된 2조 4,794억 7,780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623억 5,323만 9천 원이 증가된 3,848억 2,474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추경2회 일반회계 세입 >

2026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단위:천원)	
장 · 관 · 항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479,477,809	100.00%	2,263,196,032	100.00%	216,281,777	9.56%
100	지방세수입	532,200,000	21.46%	470,700,000	20.80%	61,500,000	13.07%
200	세외수입	162,843,290	6.57%	147,109,919	6.50%	15,733,371	10.69%
300	지방교부세 등	293,419,000	11.83%	298,200,000	13.18%	△4,781,000	△1.60%
400	조정교부금등	190,414,000	7.68%	195,369,000	8.63%	△4,955,000	△2.54%
500	보조금	1,113,247,631	44.90%	1,027,632,030	45.41%	85,615,601	8.33%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7,353,888	7.56%	124,185,083	5.49%	63,168,805	50.87%

먼저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총 2,162억 8,177만 7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615억 원,

세외수입 157억 3,337만 1천 원,
 국도비보조금 856억 1,560만 1천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31억 6,880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47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 49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천원)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26,896,495	351,631,581	75,264,914	21.4%
도시국	62,363,883	54,862,328	7,501,555	13.67%
교통국	233,570,381	178,336,379	55,234,002	30.97%
미래도시추진단	39,312,054	36,194,521	3,117,533	8.61%
도로관리사업소	49,475,130	42,996,668	6,478,462	15.07%
공원녹지관리사업소	42,175,047	39,241,685	2,933,362	7.48%

▪ 도시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548억 6,232만 8천 원 보다 13.67% 증가한 623억 6,388만 3천 원이며,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 65억 9,501만 2천 원, 공동주택 단지안 공공시설물사업 2,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교통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783억 3,637만 9천 원 보다 30.97% 증가한 2,335억 7,038만 1천 원이며, 광역철도 운영 123억 1,044만 3천 원, 교통질서확립사업 191억 1,364만 8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61억 9,452만 1천 원 보다 8.61% 증가한 393억 1,205만 4천 원이며, 도시재생 및 재정비 촉진사업 8,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429억 9,666만 8천 원 보다 15.07% 증가한 494억 7,513만 원이며, 도로정비 사업 20억 5천만 원, 자전거도로 사업 8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92억 4,168만 5천 원 보다 7.48% 증가한 421억 7,504만 7천 원이며, 도시공원 유지관리 4억 110만 원, 하천공원 유지관리 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98억 1,269만 4천 원에서 7.51% 증가한 213억 115만 7천 원으로 시 전체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14.81%에 해당합니다.

< 2026년도 추경2회 기타특별회계 >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총 계	21,301,157	19,812,694	1,488,463
교통사업 (주차관리과)	14,921,515	14,749,860	171,655
도시재정비촉진 (도시재생과)	3,087	21	3,066
지하수관리 (사업운영과)	362,480	351,410	11,070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건축관리과)	6,014,075	4,711,403	1,302,672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068억 5,224만 7천 원에서 16.51% 증가한
2,409억 9,895만 2천 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62.63%에 해당합니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75억 9,364만 7천 원보다 4.22% 증가한 704억 4,8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92억 5,860만 원보다 22.47% 증가한 1,705억 5,0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기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입세출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
필요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예산 산출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